

제 69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8월 1일 상오 10시 4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8월 1일 하오 8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부의장 정 응 표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임석희, 천철수, 이정권 의원
6. 출석공무원 :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68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2) 제 68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 (3)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
가. 목포빙설 위생협회
나. 남교동 제 2 공설시장 번영회
- (4) 감사문 발송 결과보고
- (5) 부산물 관계 조사 결과보고

◆ 부의안건

- (1) 목포빙설 위생협회 진정서 처리의 건
- (2) 남교동 제 2 공설시장 번영회 진정서 처리의 건
- (3) 합의행정의 진상
- (4) 동 연합회 해체여부

- (5) 의회비중 여비 및 특별관공비 지출내역 보고
- (6) 유달 제재소 (창고 및 주택)건축허가 처분 진상
- (7) 도입대맥 원료 배정경위
- (8) 상수도 공사 설계변경 경위
- (9) 부산물 관계 처리의 건

8. 토의사항

◎ 제 68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 68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위 회의록 통과도중 강영락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개정안 통과시 제 30조가 가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의규칙 제 82조 의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라야만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중에 6명이 퇴장하였으니 본 건 자연폐기 된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어 즉시 정정 통과시켰음.

- 박두순 의원 참석하다.

(상오 11시 15분 현재)

◇김 상 태 의원

- 회의소집 요구에는 31일부터 1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써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야 소집하고 1일간 단축시킨 이유를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회의 긴급소집 통지서를 접수하고 깜짝 놀랐다. 긴급소집이라 하면 천재지변이 있다던가 시간 부나 의장단이 시 재를 몽땅 횡령하였다던가 하였다면 모르겠거니와 소집목적의 의사일정을 보건대 보통 회의소집으로도 능히 처결할 수 있는 안건인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를 의장은 설명하라.

◇의장 김 삼 성

- 김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집요구서에 의하여 31일에 소집하지 아니하고 오늘 소집하게 된 것은 사무국에서는 30일 오후 4시경에 접수하여 본인 사택에 수차 온 모양이었으나 사무로 인하여 늦게 귀가한 관계로 못 만나고 익조(익일아침) 상오 7시에야 그 서류에 결재를 하였던 탓이고 회기 문제는 의회 스스로가 정할 문제이니 필요하다면 연장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다.

- 김상태 의원의 질문도 지당한 말이라 하겠으나 요구서에 긴급으로 요청되었었고 16명 의원이 가족적 분위기로 지내자는 의도에서 피차 불평불만을 지양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인 의원

- 의회소집 요청자의 1인으로써 그 이유를 밝히려한다. 하 시장도 미 환송이라는 명목 하에 정 부의장이 일시에 의회를 비웠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향상과 복리증진을 담당한 의결부가 공백상태로 마비 상태를 면하기 어려웠으며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기치 못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근경(近頃)소위 합 의행정이 지상에 보도되자 시민의 여론은 비등하였으며 유달제재소 건축문제만 하더라도 방금 50여명의 시민이 건설과에 참집(參集)하여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기독교 단체에서는 국제기독교 연합회에 호소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종의 진정사태가 드러나 시중여론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왜 이것이 긴급지사가 아니겠는가. 실은 의장단이 귀향 즉시 회의소집이 있을 것으로 알았더니 없었기에 부득이 긴급소집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 빙설위생 협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 남교동 제 2 공설시장 번영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서기 박찬대 낭독. 아울러 『청원서 처리』에 관한 내무부 차관 통첩문 낭독이 있었음.

◇정 응 표 의원

- 이 회의 최대 의무인 주민의 청원이니 만큼 내무부 차관의 통첩대로 각 본 회의에서 접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여야될 것이다.
그러므로 병설위생협회 관계는 문사위원회에 제 2호 시장관계는 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심의케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내무부차관의 통첩은 도의회의 경우를 지칭한 것일 것이다.

- 민원서류는 신속히 처리한다는 견지에서나 청원서 1건을 처리키 위하여 무단의 노력과 경비를 낭비하여 본 회의를 개최하여야만 된다는 모순성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회의규칙 59조를 살려야 될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양론으로서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오늘이라도 즉각 의안으로서 정식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김경인 의원의 발언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나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려면 그렇게 안될 것이며 예를 들어 오늘의 제 2호 시장 진정서 같은 것도 폐회중이라면 의장이 자의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되겠는가. 청원서 자체는 전 의원이 그 경중을 논의해야 되고 또 알아야 할 문제이며 회의규칙 제 59조도 그 해석이 애매한 것이니 내무차관의 통첩대로 그 후부터 실시할 것을 결의안으로써 제안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강 영 락 의원

- 양 진정서를 위요하고 다수시민이 방청차 운집하여 있으니 양 건을 즉각 정식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개의하다.

- 김경인, 김창희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 강영락 의원 개의회다. 표결결과 재석 12명 중 가 8표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원

- 양 진정서를 부의 안건 순서 1, 2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감사문 발송 결과보고(대 전남도의)

서기 박찬대 낭독

◎ 부산물 관계 조사 결과보고

◇명 남 철 의원

- 별도 인쇄물을 배부하였으니 일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식의제로 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안건

◎ 빙설위생협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

◇김 상 대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전차 회의에서 집행부로 이송한 지 2주일이 경과한 금 일까지 아무런 해결을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심히 유 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모종조치를 취할 모양인데 각 의원들께서는 편파적이 아니고 도의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김 창 희 의원

- 전차 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주장한 바 있었거니와 영세업자를 살린다는 견지에서 빙과업자 측에서 양보하도록 집행부 측에서 종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복안을 청취할 것을 요망한다.

◇사회과장 박 규 성

- 본 건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연된 것이나 모종복안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회의석상에서는 발표하기 곤란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균 의원

- 법적해석으로 보아서는 빙과상에 대하여 빙설업 허가를 하여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 그리하오나 도의적인 입장에서 빙과상 16건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것 동의. 재청 - 삼청

◇김 남 진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동기는 약자를 돕는다는 견지의 발언일 것이나 허가의 근본 취지는 빈부의 차이 구별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위생시설의 적부면에 있을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인 검사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본 건 처결에 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써 발언하는 바입니다.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진정서의 내용이 40여명 가족의 생계유지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진정서가 있어서 양립된 문제도 아닌 것이니 진정서의 근본골자를 충분히 음미하여 정식을 배제하고 공정한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정당한 집행방안을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김 경 인 의원

- 허가의 근본 요소가 위생시설의 적부에 있을 것이다. 김성균 의원의 동기와 같이 집행부에 취소건의를 하여보았자 이것이 불법의 결의라고 하며 재의 요청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 문제로서 시시비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의 선까지만 말하여 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전차 회의에서 건의하였던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 빙설업자 제품보다 빙과상 제품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에서 김성균 의원의 동의와 같이 허가취소 건의를 해보았자 일차허가 하였던 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는가.

- 이것은 자가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정당한 결의라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동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방금의 동의는 철회하고 행정부의 복안인 정비요강대로 조속실행 하도록 집행부에 건의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오전회의 휴회 선언하다. (하오 1시 10분 현재)

- 하오회의 속개 선언하다. (하오 2시 10분 현재)

◎ 제 2 공설시장 번영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

◇김 성 균 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제안이유설명

◇정 응 표 의원

- 과거에 없었던 포탈료를 징수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징수한 액면과 징수원은 누구인지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명 남 철 의원

- 첨가하여 질문하겠으나 조례 제 22조에 규정한 것은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다가 그 사용료를 납부 않을 목적으로 시장 외에 나간 상인에 대하여 포탈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까지 아울러 하여주시기 바란다.

◇산업과장 김 연 수

- 명남철 의원의 질문은 조례 제 22조에 의하여 포탈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건 포탈료 징수는 6월 28일에 7월 5일자 기한부로 이행하도록 공고문을 첨부하여 주지시켰으며 그 후부터 징수하였던 것입니다.

- 일일평균 4,000환 가량 수입되며 인건비로 1,000환 가량 지불되는 것입니다.

◇김 창 희 의원

- 포탈세를 징수하려면 20환은 적다. 차라리 다액을 징수함으로써 가로상행위를 근절시켜야 될 것이다.

◇명 남 철 의원

- 본 의원이 2, 3일 전에 남교동 및 향동시장 주변을 실지 답사한 적이 있는데 남교동 시장 가로상이 380명 가량이고 향동시장이 180가량 되는 것이다. 집행부의 말에 의하면 1인당 20환씩 징수하여 4,000환 밖에 안된다니 언어도단인 것이다. 징수하려면 철두철미 징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지하여야 될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산업과장의 말에 의하면 집행부와 경찰서간에 본 건을 위요하고 상당히 골몰하고 있는 것 같으며 포탈료 징수도 완전히 안되며 도로정비도 원활히 안 되는 것이니 산업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행부와 합작연구 검토케 할 것을 동의.

- 김남진 의원의 발언에 이어 김경인, 정응표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명 남 철 의원

- 본 건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포탈료 징수를 보류토록 할 것을 동의집에 첨가한다.

- 동의집 수락 김남진 의원 동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사회교체 정응표 부의장 (하오 3시 현재)

◇조 양 순 의원

- 이정권 의원은 국가고시 수험차 상경중에 있으나 여비부족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 2일분씩의 일비를 거출하여 송금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사회교체 김삼성 의장 (하오 3시 3분 현재)

◇김 남 진 의원

- 목하 진행중인 상수도 공사 완수를 위하여 중요 시유재산을 매각처분하고 있는 중 당 시 유일의 격리병사인 대성병원의 신축자금이 금년 3월에 350만 환의 보조영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현금지령이 없는 형편으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타시에 뺏길 염려가 농후하오니 당 시의회에서 중앙 및 도에 2인 정도의 촉진위원을 파견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촉진위원을 파견하는 것은 찬동하는 바이나 행정부 측과 상의하여 그 시기를 포착하여 출장할 것을 첨가.

- 동의집 수락.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촉진위원으로 김남진, 조양순 의원을 지명

◎ 합의행정의 진상

◇총무과장 장 건 식

- 항간에 합의행정을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의결부와 행정부가 오신도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행정이라 함은 다스리는 행정이 아니고 알리는 행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을 의결부에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한 안전에 대하여 합의하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합의건 수라함은 시장님 출발 전에 10건 출발 후에 3건(각기 건명지칭)인 것입니다.

- 그리고 이에 대한 오해가 매주 토요일을 기하여 의회 측 간부에게 집행부에서 1주일에 해온 것을 알리는 것을 마치 합의행정이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보충설명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하 시장이 도미 직전 도지사를 심방하여 합의행정을 하겠다고 진언하였다고 귀임 후 공언한 바 있었더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자문을 의미한 것인지 합의행정을 하여온 것인지 해명하여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시장 도미 전 10건 도미 후 3건 이란대 실시후의 효력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금반 하 시장의 도미환송이라는 명목으로 정 부의장이 동시에 1주일이상 출장하였기 때문에 당 시의회는 공백상태를 지속하여왔다.

- 물론 정 부의장이 동시에 출장하여야만 될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의 처사는 비난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앞으로는 교체하여 공백상태가 없도록 주의하겠다.

◇총무과장 장 건 식

- 김경인 의원 질문의 시장님이 합의행정을 하겠다고 공개하셨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강영락 의원질문의 효력 여하문제는 우리집행부로서는 알려 드렸으니 잘 모르겠다.

◇명 남 철 의원

- 만약 합의행정을 하여 그 결과가 좋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못된 점을 지적하여 말하여 주면 좋겠다.

◇강 영 락 의원

- 지방자치법 제 1조부터 96조까지는 우리 의결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였고 97조부터 122조까지는 집행부의 그 것을 규정하여 각각 그 사명을 엄연히 분리하였는 것이다. 기안용지나 기타공문서에 의장이나 기타 의원이 합의결재를 하였다 하면 그는 집행부의 행정을 간섭한 것이며 의회전체를 모독한 것이다. 꼭 합의를 해야할 일이 있다면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될 것이다. 도정업자로부터 제기된 불미한 진정서 같은 것도 철회되었다 하나 의장단과 산업위원장이 합의하였다 하며 유달제재소 신축허가 서류에도 사종합의 행위를 하였다하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하 시장 역시 도미 2일 전에 건축 허가서류에 결재를 하여 종교를 모독한 주모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의회가 부하할 것인지 의장만이 질것인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합의행정이라는 문자자체가 있을수 없으며 지방자치법에도 상호침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 의원은 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으며 침소봉

대 격으로 어지럽게 만들려고만 애를 쓰는 것 같다.

- 이는 오직 모종정략이라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만약 합의행정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해독이 있었다면 책임짓고 물러나가겠다. 그리고 도정업자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본인들이 철회하였으나 제출하였을 때의 동기도 업자들의 오해에서 일어났다고 보아지는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달 제재소(창고 및 주택) 건축허가 역시 허가조건이 성립되어서 허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의에 응하였을 따름입니다.

◇김 경 인 의원

- 법정 회의시간인 하오 4시가 박두하였으니 회의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정 부의장 동시 출장케된 경위 설명

- 소위 합의행정이라고 지적한 정 부의장 날인 문제는 의장이 날인을 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의회부터 관례적으로 집행부의 자문에 응하였을 따름인데 억지로 합의행정이니 하고 떠들며 죄인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애쓰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 4시 10분 김일섭 의원 참석

◇김 경 인 의원

- 관례적으로 초대의회부터 있었다 하나 합의행정이라는 말은 시장 자신이 공인한 바이고 종전에 없었던 합의날인을 서류에 하였던 것이다. 유달 제재소 문제만 하여도 의장이 의회의 정식결의나 있는 것 같이 합의결재를 하였고 도입양곡 배정문제도 역시 동일하다. 골자는 무엇 때문에 서류에 합의날

인을 하였냐는 것이다. 이로써 16명 의원의 위신을 몰락시켰고 진정서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의회의 권한이 집행부에 앞설 수도 있고 뒤 설 수도 있을 것이다. 합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행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피차반대하기 위한 반대만하여 반목시하는 것을 삼가야 될 것이다.

◇김 인 섭 의원

- 의장 불심임 문제가 있는 후 최대의 열전과 냉전이 전개된 것 같은 감을 주는데 여·야 각기 시 발전을 위하여 상호 양보하여주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이러한 문제는 의원각자의 권리 침해를 당하였다는 견지에서의 오해일 것이다. 사전 전 의원의 양해가 있는 일 이였다라면 여사한 오해가 야기 않았을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결국은 날인했고 안한 차이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가 차기 의회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는다.

◇강 영 락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가부결론을 내려야 할 줄 믿는다. 요는 앞으로 합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유달 제재소문제도 의장단이 서류에 합의날인을 하였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자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 하며 변명하려 하는 것인가.

◇부시장 이 병 규

- 의장단 합의문제는 앞으로는 회의록을 만들어 비치기로 하고 날인은 안 받기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연합회 해체여부

◇서기 박 찬 대

- 본 건에 대한 도 상대 조희문 낭독으로서 해명이 있었음

◇김 상 태 의원

- 전차 회의에 본 건 건의문을 제출 직전 본 의원이 부시장을 심방하였을 때 의회의 결의만 있다면 즉시 해산시킬 용의가 있다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시장 이 병 규

- 그 당시 수락하게 된 동기는 동장은 정당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정치 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였으나 그 후 도와의 조희관계도 있었고 동 연합회가 있음으로서 오히려 시정에 협조한다면 방해가 없는 한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아졌던 것이다.

◇김 상 태 의원

- 재작일 동장 회의석상에서 부시장은 신문구독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하며 서울신문 구독료를 6개월간이나 지불 않는 등은 그 사상을 의심한다는 말을 하였다 하니 그 사실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부시장

- 동(洞)의 신문 구독상황을 보고케 한 것은 동 예산에 2부정도 밖에 구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리한 부수의 구독을 방지하려 함이였고 서울신문 구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집행상 편의한 점을 천명하였을 따름입니다.

◇강 영 락 의원

- 동 연합회 사무소간판을 동사무소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김 상 태 의원

- 전차 회의에서 동 연합회 해산 건의를 16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이다.

◇의장 김 삼 성

- 집행부 측에 해산시킬 것을 극력 종용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비중 여비 및 특별판공비 지출내역 보고

◇서기 박 찬 대

- 보고

◇의장 김 삼 성

- 이 문제는 의회비의 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결의 없이 자의로 지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데에서 나온 것 같으나 초대의회에서부터 휴회 중에는 별수 없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니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출장의 경위 설명이 있었음)

◇조 양 순 의원

- 용당 도선의 구입경위 설명요청

◇건설과장 이 춘 흠

-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음

◇김 창 희 의원

- 의회비중 여비 지출문제에 대하여 하 시장 도미환송을 비행장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었다라면 의회의 결의가 있는 후 었던 들 이러한 말이 안나왔을 것이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 삼 성

-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 유달 제재소 (창고 및 주택)건축허가 처분 진상보고

◇건설과장 이 춘 흠

- 경위보고

◇김 경 인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현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 전차 회의에서 본 건 진정서를 위요하고 논의할 적에는 허가관청인 집행부에서 허가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것이니 집행부에 일임하자는 데에서 일단락을 보았던 것입니다.

- 본 건 창고 및 주택건축을 허가한데 대하여 집행부 측은 미래의 목포시를 착안하지 아니하고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 시가지를 혼합지구로 오인하는 것 같으며 창고 및 주택허가 일진데 창고가 주 건물일 것이며 주택은 종 건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창고를 경영하면 주민의 안녕 질서에도 곤란이 생기는 것이며 창고를 꼭 그 장소에 건축하여야만 될 형편이 무엇이겠는가. 집행부 측은 사전에 쌍방을 소환하여 선처했던 들 이러한 문제가 야기 안 되었을 것이고 교회측에서는 창고를 빙자하여 제재소 건축을 우려하는 것이다.

- 결론은 자기분위의 해석을 지양하고 사회문제를 고려하여 맹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강 영 락 의원

- 저반 본 건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적에 본 의원이 증언한 바도 있었거니와 그 당시는 지나친 기우라 하여 집행부의 태도결정을 보기도 하였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하루빨리 지구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기우성이 농후한 창고를 그 장소에 건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하겠으며 법적 조문에도 중요시설과는 180칸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서당국에서도 창고 건축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 시장의 귀국전이라도 일반 시중여론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 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끝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본 건에 있어서는 이 이상 논의 않더라도 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방청석에서도 잘들 알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선진국가에서는 총예산의 8할정도를 교육비에 계상하고 있는 실적인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그 7, 8할을 국방비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헌법에는 신앙종교의 자유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반 본 건 진정서가 제기되었을 적에는 본 의원 자신도 제재소 건축은 반대하였던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각하 하였던 것이다.

- 쌍방이 각기 욕심으로 욕신각신하고 있는데 하자(어느 누구)를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나 교회측에 일언하고 하고 싶은 것은 제재소가 아니고 창고 및 주택 건축허가신청일진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일종의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이러면 욕신각신 할 것을 피하고 집행부나 관계당국에 후방 국가에 수치 안 살 정도로 처결하도록 종용하고 싶은 것이다.

◇강 영 락 의원

- 쌍방관계자가 임석한 것 같으니 각기 증언을 5분 정도 청취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교회측 대표와 정씨 측 대표의 증언 5분씩 있었음

◇김 창 희 의원

- 쌍방의 발언에 의하면 교회측은 정씨 측에서 창고라는 미영하에 제재소 건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우려한 것 같으니 정씨 측의 서약서를 교회측에서 받도록 하여 그 확실성을 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강 영 락 의원

- 서약서는 정씨 측에서 낼 것이 아니라, 소음의 공장은 장소에 건축 안는다는 시장의 서약서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교회측에서의 요구를 보장할 만한 각서를 정씨 측에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그 사본을 교회측에 교부하도록 할 것을 동의집에 첨가. 동의집 수락

-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도입대 맥원료 배정 경위

◇김 산업과장

- 경위 설명하다.

◇김 상 태 의원

- 배정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면 왜 전분 분과위원회인 산업위원회에게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었으며 경원시 하는가

◇강 영 락 의원

- 윤번제로 배정하였다하나 호남정미소는 전차 배정분의 잔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배당하였든가 모모 의원이 강요가 개재되었다 하니 그 사실 여부를 밝히라

◇김 경 인 의원

- 보충발언 하다.

◇산업과장 김 연 수

- 그러한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이외 상세한 그 경위 보고가 있었음)

◇강 영 락 의원

- 본 건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상수도 공사 설계 변경 경위

◇건설과장 이 춘 흠

- 경위 보고가 있었음

◇강 영 락 의원

- 예정 가격과 입찰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낙찰을 시킨 이유 여하

◇건설과장 이 춘 흠

- 최저가격으로 낙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과장의 보충 답변이 있었음
- 이어서 김경인, 김성균, 강영락 의원의 시시비비의 발언이 있었음

◇김 경 인 의원

- 종결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부산물 관계 처리의 건

◇김 경 인 의원

- 자치행정실시 후 5년간에 공하도록 우금 일차의 재고조사를 안하고 있는 주무과의 경솔한 처사는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부산물 잔량의 정식청산을 맺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다.

◇김 남 진 의원

- 불일내에 모선이 또 입항하게 될 것인데 2개월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니 차기 모선에 입항할 때까지 청산 짓도록 할 것을 첨가

◇명 남 철 의원

- 본 건 청산을 집행부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의회 측에서도 청산위원을 정하도록 첨가

◇김 경 인 의원

- 김남진 의원의 첨가 동의는 수락하겠으나 명남철 의원의 첨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김경인 의원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강 영 락 의원

- 동정세 차압 처분에 법적 근거 유무 및 집행하는 기관은 시 인지 동 자체인지 답변하기 바라며 차압물품의 처리상황을 말하여 주기 바란다.

◇재무과장 박 병 열

- 법적 근거가 뚜렷이 있으며 시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압 물품은 수시수시 반환하여읍니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하오 8시 1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8월 1일

시의원 강 영 락

시의원 김 창 희

작성자 서기 주 도 식